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
관한法律중개정법률안

2003. 9.

환 경 부

1. 의결주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4항 신설)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 사유를 주민감시요원과 동일하게 함
(법 제17조의2 신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
조의3제6항 신설)
-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
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
하도록 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부처협의 완료

라. 기 타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 관한 法律중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의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결정 또는 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을 “결정·면허(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 및 고시·공고가 있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중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2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

제25조의2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중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1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에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는 <u>都市計劃法 第10條의2</u>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道綜合計劃,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 및 廢棄物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基本計劃에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都市基本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 ----- --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u>----- ----- ----- ----- ----- ----- ----- ----- ----- -----.
第6條(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등) ①~③(생 략) <u><신 설></u>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u>

현행	개정안
第11條(都市計劃區域밖의 立地에 대한 用途地域 擬制)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立地가 告示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地域이 <u>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u>	제11조(도시관리계획구역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
第12條(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 등의 擬制등) ①第11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다음 各戶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정·결정 또는 免許(이하 “<u>認·許可등</u>”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2. (생략) 3. <u>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區域안에서의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の 지정,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u>	第12條(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등) ①제11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이하 “<u>인·허가등</u>”이라 한다)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2. (현행과 같음) 3.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規定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의 規定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u>

현행	개정안
4. 20. (생략)	4. 20.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第25條(地域住民의 監視)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活動을 監督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생략) 第25條의2(住民監視要員の資格) 住民監視要員은 任命당시 계속하여 해당 周邊影響地域에 3年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支援協議體에서 추천한 者로 한다. <u>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住民監視要員이 될 수 없다.</u> 1. <u>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u> 2. <u>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u> 3. <u>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其間중에 있는 者</u> 4. <u>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된 者</u>	3. <u>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u> ③(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 ----- ----- ----- . <u>다만, 제17조의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 1. ~4. <u><삭제></u>